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2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서영석 · 박용갑 · 이수진
서미화 · 전진숙 · 김교홍
朴芝源 · 김 윤 · 남인순
권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4개월”을 “27개월”로 한다.

2. 자녀가 2명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0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 -----.
1. 자녀가 <u>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u> <u><신 설></u>	1. ---- <u>1명</u> ----- : <u>12개월</u> <u>을 더한 개월 수</u>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u>24개월</u> 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u>자녀가 2명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u>
② ~ ④ (생략)	3. ----- : ---- ----- ----- <u>27개월</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